

연구실 안전공제(보험) 계약조건

1.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가. 공제(보험)기간: 2026년 10월 31일 00시 ~ 2027년 10월 30일 24시 (365일)

나. 공제(보험)적용: 공제(보험)기간 내 휴무·공휴일 관계없이 적용

다. 가입대상 :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활동
종사자(대학생·대학원생,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라. 총인원수 : 16,979명

[단위 : 명]

사고 위험도 구분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보조원	연구원	합 계
위험도 낮음(유해인자 소량 또는 미취급)	3,394	1,797	0	0	5,191
위험도 보통(유해인자 취급)	8,040	2,644	0	0	10,684
위험도 높음(화학, 화학공학 분야)	757	347	0	0	1,104
합계	12,191	4,788	0	0	16,979

마. 공제(보험)종류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보험)

바. 공제(보험)적용

- 연구활동종사자 전공 및 신분에 따라 공제(보험)료 차등 적용
- 계약 전 기간에 걸쳐 연구개발과 교과과정 및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르는 모든 보상은 본인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보상
- 연구개발과정과 교과과정에서 직접 필요한 시험, 실험, 측정, 분석 등 이와 유사한 활동 중의 손해
- 연구실험용 기계, 기구, 장치, 실험재료의 구입, 설치 및 건설 폐기 등 이와 유사한 활동 중의 손해
-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
- 타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에서 상기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입은 부상 등 신체상의 손해

사. 공제(보험)가입 :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인수

아. 공제(보험)료 납부 : 계약서 체결 시 납부 방법 및 납부 시기는 협의하여 시행
자. 피공제(보험)자 변경에 따른 계약 사항

- 복학·입학 : 복학·입학 등 연구활동 시작일로부터 피보험자의 보장은 즉시 개시하고, 공제(보험)료 추가 납입 등은 추후 정산
- 졸업·휴학 : 졸업·휴학 등의 연구활동 종료일로부터 피공제(보험)자의 보장은 해제하고, 공제(보험)료는 추후 정산
- 공식적인 가입·해지 기준일자가 없는 경우는 부산대학교가 공제(보험)가입 및 해지를 요청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추후 정산
- 해당 인원의 변동에 의한 정산 시 최초 납부한 공제(보험)료의 9%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만 정산

차. 공제(보험)금 신청 및 지급

- 공제(보험)금 신청·접수 : 피공제(보험)자 → 대학 → 연구실 안전 주무부서 → 공제(보험)사
- 공제(보험)금 지급 : 공제(보험)사 → 피공제(보험)자 예금통장 입금 (20영업일이내) 후 발주처에 통지

※ 경미한 상해의 경우, 보통 1~3일 이내 지급

2. 공제(보험)내용

가. 보상기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 발생 시 보상

※ 본교 또는 다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의 사고 시 본인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보상 (무과실 책임법리)

나. 보장내역 및 한도

구 분	보장한도
유족·장해급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5호 [별표1] 후유장해 등급별 보상금액(최대 2억원 기준)의 2.5배(최대 5억원) ※유족급여의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
요양급여	최고한도 1인당 20억원 범위에서 실제 부담 의료비
입원급여	입원 1일당 5만원(요양급여와 별도 지급, 3일 초과 일부더 30일 이내)
장의비	1천만원(유족급여와 별도로 지급)
중대한 화상치료 지원금	약관에서 정하는 중증화상 진단시 1천만원 정액 보상 중등도화상 진단시 4백만원 정액 보상
치료 후 간병비용 지원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여 받은 경우(30일 이내 한도)
수업료 손실지원금	15일 이상 연속입원 정규학기 미수료, 손실액 발생시 100만원 한도
기숙사비 손실지원금	15일 이상 연속입원 잔여학기 사용불능, 손실액 발생시 30만원 한도
※ 1인당 보상금액이며, 사고 인원수 또는 사고 발생건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	

다. 보장내역별 제안내용

- 1) 사망/후유장해 보장 공제(보험)금: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2) 의료비 관련(상해): 실제 발생한 의료비 보상
- 3) 지급제한(면책사항)
 - 계약자나 피공제(보험)자의 고의, 다만 계약자나 피공제(보험)자의 교육·연구 활동 목적상 의도적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
 - 피공제(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
 - 피공제(보험)자가 입은 상해가 직접원인이 되어 걸린 질병이 아닌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음
 - 피공제(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단, 공제(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

※ 외국에서 연구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

- 『연구실안전법』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름으로 국내에 한하여 적용
- 단, 해외로 나가있는 선박에서의 안전사고는 보상

※ 체육, 운동관련 사고는 이유를 불문하고 보상하지 않음

4) 기타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표준 보험약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5호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에 따름

2026. 09.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주무관 이 강 석

